# 「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
O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)

## 가. 제안이유

(구)대관령상행휴게소의 주차장 이용료에 대하여,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.

# 나. 주요내용

- 제4조제1항에 이용료 감경 대상을 정함(종전 제4조제2항)
- 제4조제2항에 이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(종전 제4조제1항과 제3항을 정비)
- O 제4조제3항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(신설)

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#### O 본 조례안은

(구)대관령상행휴게소의 주차장 이용료에 대하여, 이용료 감액과 면제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평창군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임.

#### O 주요내용은

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이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,

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

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,

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등 평창군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# O 검토결과,

대관령휴게소는 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·운영 대행하는 시설로써 '21년 5월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제정 이후 금번 새로 개정하는 것임. 새로 추가되는 사항은

'평창군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 근거'를 마련하는 내용으로

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이용료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보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이용료 감면)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  - 1.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·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
  - 2.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.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
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 차
- 3.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
- 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
- 2.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
- 3.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 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
- 4.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혀 행

- 제4조(이용료 감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과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용료를 전액 면제한다.
  - 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  - 1.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·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 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에 동승한 경우
  - 2.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

개 정 안

- 제4조(이용료 감면) ① 「장애인복 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 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을 감경한다.
  - 1.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·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 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에 동승한 경우
  - 2.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.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를 수행하는 차량
  -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

③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.

- 3.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 용하는 경우
  - 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
  - 2.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

    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

     경우
  - 3.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